

제 호

농지 [] 임대차 종료명령서 [] 사용대차

| | 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임대인 | 1. 성명(명칭) | | 임차인 (사용 대차인) | 1. 성명(명칭) | |
| | 2. 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 | | | 2. 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 | |
| | 3. 주소 | | | 3. 주소 | |

4. 종료명령대상 농지 및 그 면적

| 소 재 지 | | | | 지 번 | 지 목 | 면적(m ²) | 비 고 |
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시·도 | 시·군 | 읍·면 | 리·동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합 계 | | | | | | | |

5. 종료명령 발생사유

6. 종료명령 일자 및 기한

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「농지법」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 (임대차 또는 사용대차) 계약을 종료명령기한까지 종료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

유의사항

1. 이 통지서에 따라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농지법」 제60조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.
2. 이 통지서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.